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설비 보급 및 운영지원협력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M.O.U)

한국공동주택 IT안전기술협회와 주식회사 유라이프솔루션즈(이하 ‘양 기관’)는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설비 보급 및 유지보수 분야의 시장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업무협약은 양기관이 상호협력하여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설비보급 및 유지보수” 사업에 관한 시장 개발을 하는데 상호협업을 통하여 상호 이익증진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본 업무협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안전설비 보급 및 운영지원” 이라 함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관련 시설물의 보안에 관련한 해킹,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망분리 솔루션에 관한 것이다.

“유지보수 분야” 는 공동주택 및 시설물의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 관련하여 점검 및 평가, 정비와 관련된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2. 본 조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관계법령, 상관례 및 관련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1. 각 당사자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나가기로 하며,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2. 각 당사자는 상호 보유한 기술과 영업,마케팅 활동을 결합하여 네트워크 분야의 관련 신기술 및 신사업개발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

제4조(각 당사자의 역할)

1. 본 업무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공동주택IT안전기술협회는 공동주택에 설치될 망분리 서버를 무상 지원하며, 관련 안전관리교육 및 유지보수 컨설팅을지원한다. 상세내용은 별도 협의한다.

나. 주식회사 유라이프솔루션즈는 한국공동주택 IT안전기술협회에서제공된 망분리 서버를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유지보수한다

제5조(비용부담)

각 당사자는 본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재원이 필요한 경우는 각 당사자의 역할 주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책임으로 하되, 재원의 필요성 및 역할 등은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6조(특약사항)

각 당사자는 본 업무협약과 동일 사업모델로 제3자와 사업협력 또는 계약을 할 수 없다. 단, 각 당사자간 사전 합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효력 및 유효기간)

본 업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체결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 양측의 합의에 의해 변경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제8조(해지)

1. 각 당사자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업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2. 각 당사자는 업무협약 해지사유가 발생시는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3.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업무협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시정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본 업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본 업무협약과 관련한 상호협력이 구체적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일방 또는 각 당사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일방 또는 각 당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밀준수)

1. 양 기관은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양 기관은 각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협약을 통해 발생한 어떠한 정보나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

는 그 위반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법적구속력)

본 업무협약은 각 당사자 간의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제10조 및 본 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2조(공정 의무)

각당사자(임직원 포함)는 본 업무협약의 체결, 이행 및 유지에 있어 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또는 본 업무협약과 관련한 제 3자에게 이를 해칠 수 있는 '비위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기타)

1. 본 업무협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2. 본 업무협약은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3.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없이 본 업무협약 상의 지위 또는 권리 및 의무의 전부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4. 본 업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업무협약의 해석에 대한 이견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해소되되,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따른다
5. 본 업무협약에 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하여 소송으로 해결한다.

위와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업무협약을 2부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이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4년 5 월 2 일

한국홈네트워크안전관리협회

회장 ☐ 윤 ☐ 창 ☐ 전 ☐ (서명)



주식회사 ☐ 유라이프솔루션즈

대표이사 ☐ 천 ☐ 세 ☐ 길 ☐ (서명)

